

서울특별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55
----------	------

2017년 8월 3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자 : 이성희 의원(찬성자 15명)
- 나. 발의일자 : 2017년 8월 9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10일
- 라. 상정결과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8월 30일,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성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시장이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환류(feed-back) 절차를 필수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참고사항

- 참고사항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계획 수립 · 추진 시 수립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환류 절차를 필수화하여 계획 수립과 추진의 체계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의 유치 촉진,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 등 국제회의산업의 육성 ·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 ·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립된 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동 조례에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p> <p>① (생 략) 1.~3.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조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나. 종합검토의견

- 국제회의산업¹⁾은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 그 시장규모가 크고 호텔, 교통, 관광 등 연관산업 발전에의 기여도가 크며, 특히 관광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해마다 국가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에 관한 통계를 조사 발표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의 발표(A+B 기준)에 따르면 서울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세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제회의 분야에서 팔목할 성장을 이루며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
-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시 반영함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의 추진에 있어서의

1) 이전에는 함께 모인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Conven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국제회의와 전시, 그로부터 파생되는 상거래, 관광활동 등을 통칭하여 컨벤션산업이라 불렸고, 200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MICE산업으로 통칭하며 정책적으로 육성하였고, 이러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MICE 개념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체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국회에서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추진²⁾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생 략)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국제회의산업육성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2) 2017.5.31. 민경욱 의원 등 10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판별 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3조(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u>①</u> ----- ----- ----- ----- -----. 1. ~3. (현행과 같음) <u>②</u> 시장은 전년도 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